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5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기덕, 김원중,
김원태, 남창진, 박강산,
박승진, 봉양순, 오금란,
유정희, 윤기섭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임종국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,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,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8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진흥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 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
2.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
3.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
4.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
5.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</u> <u>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</u> <u>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</u> <u>할 수 있다.</u> <u>1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</u> <u>류 사업</u> <u>2.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</u> <u>류 사업</u> <u>3.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</u> <u>유치 사업</u> <u>4.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</u> <u>사업</u> <u>5.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</u> <u>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업</u>		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의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검토결과 이는 기추진 사업¹⁾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관광체육국 2025 <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> : 24,103,691천원

⇒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에 ① 국제체육행사 지원 : 644,890천원, ②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: 2,720,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출됨